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69호 2022. 11. 02(수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2-2126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2-2132호 생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----- 2
- 남원시 공고 제2022-2138호 도로지정공고----- 7
- 남원시 공고 제2022-2139호 도로지정공고----- 8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● 남원시 공고 제 2022 - 2126호

도로 지정 변경 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31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(변경)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m ²)	변경사항		
							변경전	변경후	비고
2022-35	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901-8(답)	김*명	2022-건축과- 건축신고-236	11.5	4	46	운봉읍 주촌리 901-8(답) (46m ²)	운봉읍 주촌리 901-10(답) (46m ²)	토지 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

남원시 공고 제2022-2132호

생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

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, 『토지이용규제법』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2년 11월 2일

남 원 시 장

1. 목 적

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.

2. 행정예고 기간 : 2022. 11. 02. ~ 2022. 11. 21.(20일간)

3. 의견제출 기간 : 2022. 11. 02. ~ 2022. 11. 21.(20일간)

4. 공고방법 :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, 시보 등

5. 관련근거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

6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

지구명	위 치	지정개요			지 정 사 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ha)		
생암지구	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일원	침수위험 지구	나	9.89	· 인근에 위치한 섬진강댐 수위 조절을 위한 방류량 증가시 외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리	

7.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

지구명	사업시기	사업예산 (백만원)	사 업 내 용	비고
생암지구	'24 ~ '27	11,54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수펌프장 1개소 • 배수로 정비 1.85km • 축제 1.2km • 교량 1개소 	

※ 구체적인 사업예정 시기, 사업예산 및 내용은 예산(국비) 지원 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.

8. 의견제출

위 행정예고(공고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안전재난과로 방문 또는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다. 기타 필요사항 등

라. 제출기한 : 2022년 11월 21일 까지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
- 우 편 : (우)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안전재난과
- 팩 스 : 063) 620 - 6706

바. 문의처 :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☎063) 620 - 6962

사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9.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

제7조(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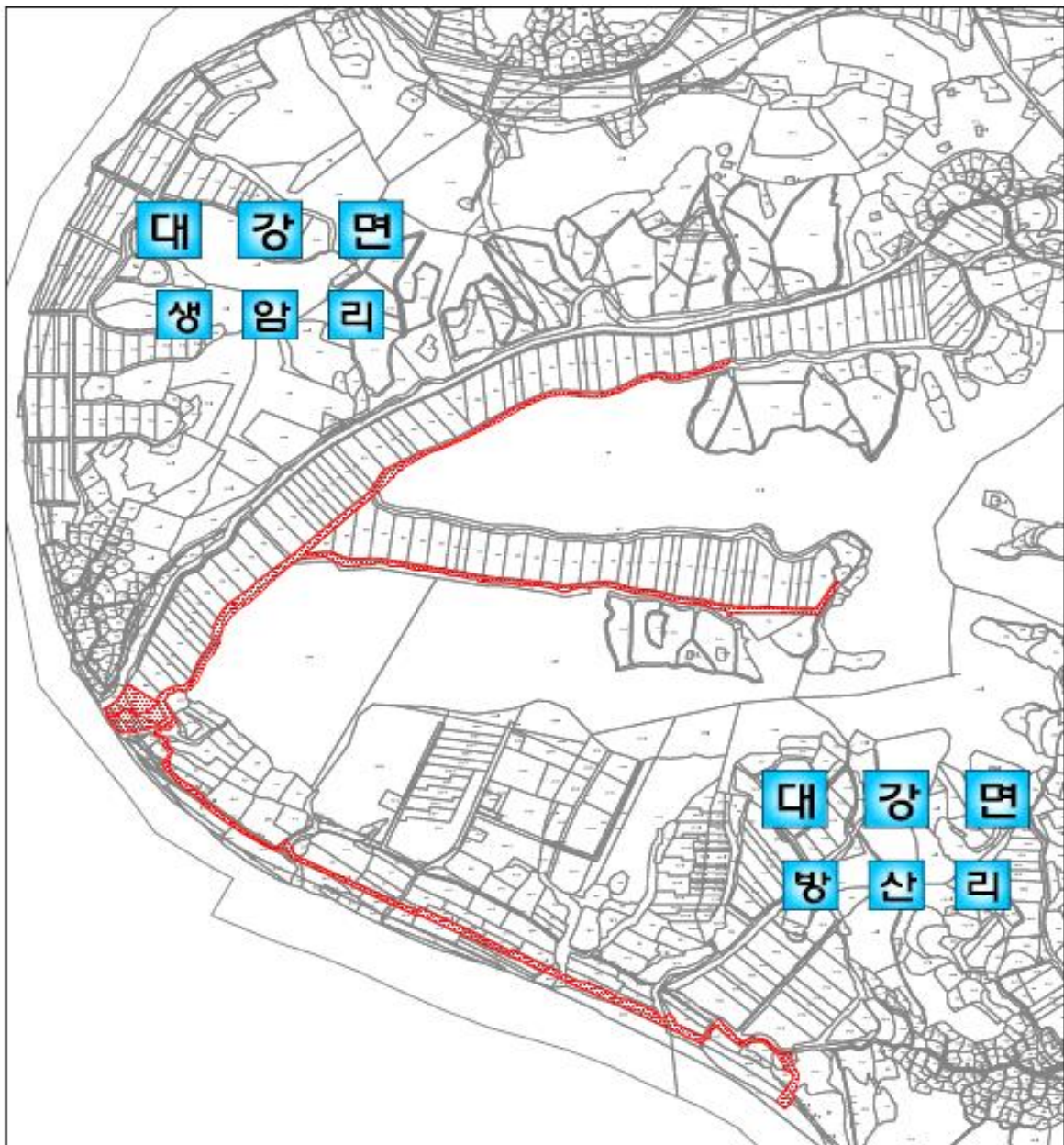
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.

1.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. 단,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·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(留水)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2.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
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
4.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

- 붙 임 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1부.
2.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부. 끝.

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

S=1:3,000



- 별 레 □
- 자연재해위험지구
- 지적선



지정권자 : 전라북도 남원시장
 지정일자 : -
 고시년도 : -
 고시번호 : -
 작성년월일 : -
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남원시장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2 - 2138호

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m ²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m ²)	토지소유자
2022- 36	전라북도 남원시 내척동 102	최*호	2022-건축과- 건축신고-237	24	4.7	110.7	102	13	최재호
							102-1	97.7	최재창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2 - 2139호

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m ²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m ²)	토지소유자
2022-30	남원시 고죽동 10	이*규	2022-건축과- 건축신고-179	191	3	818	625	418	국(농림축산식품부)
							14-3	151	김원재신
							13	29	박병규
							15	85	변한옥
							17-2	56	김한중
							16	43	안질순
							19	30	유세환
2022-28	남원시 신정동 438-4	최*주	2022-건축과- 건축신고-163	32	4	138	18	6	유세환
							123-3	3	남원시
							814	23	국(건설부)
							518-4	29	국(건설부)
							441-6	30	김형엽
							396-5	8	국(철도청)
							396-3	44	국(국토교통부)
441-7	1	김형엽							